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0년 월 일 (제 382 회)

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제 안 자	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장
제안연월일	2020년 6월 24일

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0. 6. 24.

제안자 :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장

1. 주문

-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

2. 제안이유

-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과 대외적(충남화력발전소,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)감소 등 내·외부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 19년 대비 대기질이 37%정도 개선($46\mu\text{g}/\text{m}^3 \Rightarrow 29\mu\text{g}/\text{m}^3$)
- 그러나, 고농도 미세먼지는 지정학적 위치, 기상상황, 배출오염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함에 따라 단기성과 달성에 만족하기 보다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
-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2020년 6월 30일에 종료할 경우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‘안전한 충북, 깨끗한 충북’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
- 따라서, 특별위원회의 당초 구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
관계법령 발췌

□ 특별위원회 구성

[지방자치법]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[충청북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]

제8조(특별위원회)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□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